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2. 9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8. 2. 16
- 다. 상 정 일 자 : '98. 2. 16 (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나. 개정사유
 -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변경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9조 1항중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군과 수도사용자의 공사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위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길중)

- 본 조례 개정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규정을 주민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를 “군의 필요에 의한 동일구경의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계량기와 급수장치의 확대 또는 축소 교체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p> <p>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p> <p>① - - - - - - - - - - 군의 필요에 의한 동일 구경의 노후 계량기교체나 급수 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계량기와 급수 장치의 확대 또는 축소 교체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